

길잡이를 내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련 학위과정과 양성과정을 개설한 대학 기관의 수는 2005년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며, 자격증 취득자 수도 금년부터는 한 해에만 2,000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기관이 있는 것으로 최근 심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자격 심사 신청자 가운데서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타깝게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과 자격 취득 희망자에게 자격제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길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가 한국어 교원이 되려는 분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대학 기관에게는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목 차

I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 소개	3
2. 자격 심사 관련 일반 기준	8
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8
나. 학위과정 관련 기준	9
다. 양성과정 관련 기준	10
라. 승급 심사 관련 기준	11

II .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운영 지침

1. 대학(원)의 한국어교육전공	14
가. 교육과정	14
나. 교과목	17
다. 전임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	23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	23
가. 교육과정	23
나. 수업	25
다. 평가 및 학사 관리	27
라. 교과목 강사	28
마. 일반 사항	29

III .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1. 심사 개요	30
2. 심사 시기 및 절차	31
3. 심사 내용 및 심사기준	34
가. 교육과정	34
나. 교과목(영역 판정 및 필수이수학점 적합 여부)	34
4.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의 유의 사항	36

IV. 개인 자격 심사

1. 자격 심사 신청 절차 37
2. 신청 등급 및 유형별 세부 심사기준 38
 - 가. 학위과정 38
 - 나. 비학위과정(양성과정, 경력 등) 42
 - 다. 승급 대상자 45

[부 록]

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49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57
 - 가. 현행('10년 5월 현재) 57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1조 57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부칙 제2조 ... 58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63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 나. 2010년 내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인 제·개정안 67
 -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3단 비교표 67
 - 시행령 개정안 별표 및 별지 서식 79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8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 I.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 II.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운영 지침
- III.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 IV. 개인 자격 심사

I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요

1. 한국어교원 자격 소개

■ 관련 용어 정의

- 한국어교원
 -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 한국어교원 자격증
 - 위의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과는 별개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
 -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120시간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과정을 말함.
 - ♣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이하 “단기양성기관”이라 함.

■ 자격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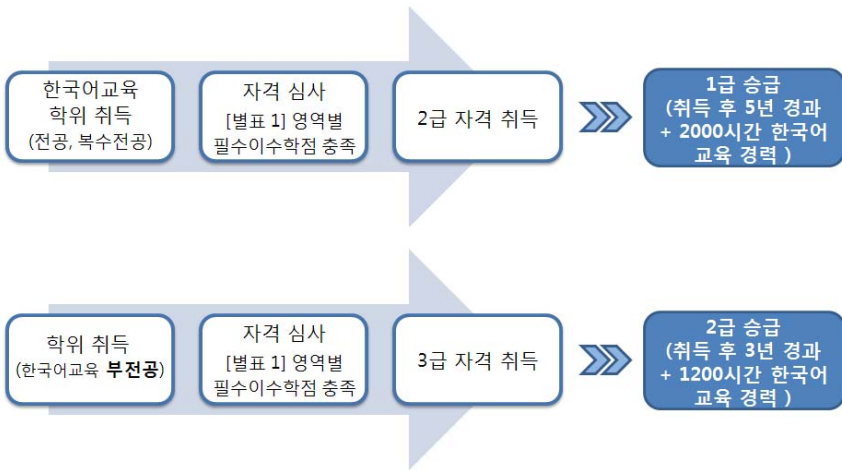
- 근 거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
- 제도 시행일 : 2005. 7. 28. ('06년부터 부여, 연 2회 심사)
- 심사 시기 :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 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주관)

※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 및 교원 양성기관 현황('10년 5월 기준)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5월	누계
자격증 취득자 수	868명	639명	842명	1,037명	1,257명	4,643명
대학(원) 전공학과	40개소	-	69개소		85개소	
단기양성기관	34개소	-	54개소	-	92개소	

■ 자격 등급 및 취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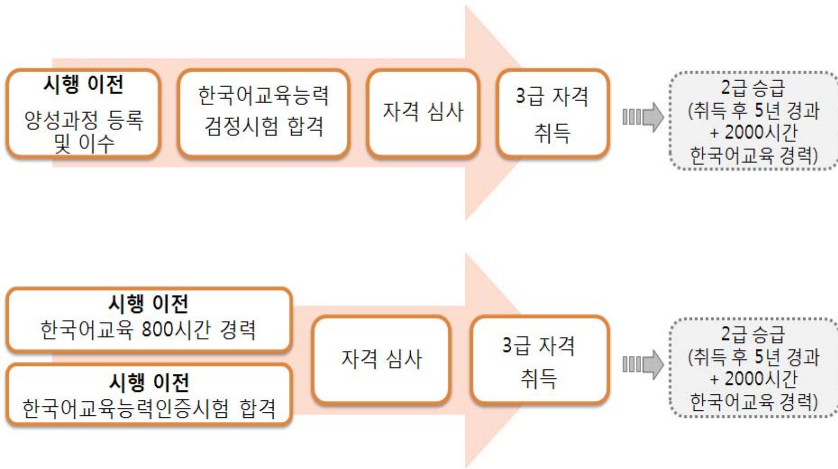
● 학위과정(대학·대학원)



● 양성과정(단기양성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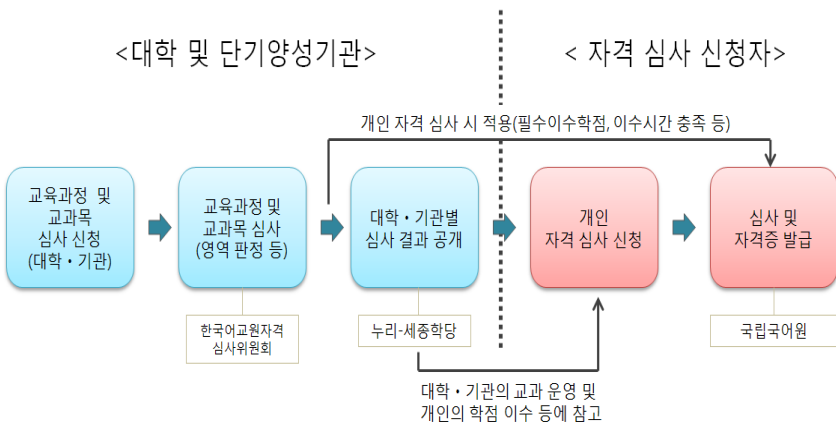


- 경과조치 대상자: 국어기본법 시행('05.7.28.) 이전 관련자



※ 현행 규정상 경과조치에 의한 3급 취득자는 승급 불가능. 승급이 가능하도록 2010년 내에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 자격 심사 체계도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 외국 국적자도 학위과정이나 양성과정 등을 통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단, 학위과정(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10년 2차 심사(9월)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 이 시험은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격해야 함.
 - 1차 시험(필기시험)일 이전에는 양성과정(12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 양성과정 이수 후 → 시험 응시
- 주 관 :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
 - * '06~'08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주관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 1차 합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사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원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2010년 시험 일정

- 1, 2차 시험 원서 접수 : 8. 23.~9. 1.
- 1차 시험 시행일 : 10. 3.(1차 합격자 발표 : 11. 3.)
- 2차 시험 시행일 : 11. 27.~11. 28.
- 2차 합격자 발표 : 12. 15.

※ 자세한 사항 및 기출문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시험 홈페이지 참조(<http://www.q-net.or.kr/site/koreanedu>)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및 한국교육원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2. 자격 심사 관련 일반 기준

가.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영역	대학		대학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전공/복수 전공	부전공		
	2급	3급	2급	3급
1. 한국어학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 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05. 7. 28. 이전 대학(원) 입학 및 졸업자(부칙 경과조치 대상자)

○ 심사기준 : 3영역, 5영역 이수학점 합산(단, 3영역 과목은 필수임.)

① 대학의 경우

- 전공/복수전공
 - 18학점 이상 이수 : 2급
 - 10~17학점 이수 : 3급
 - 9학점 이하 : 불합격
- 부전공자(3급) : 10학점 이상

② 대학원의 경우

- 8학점 이상 이수 : 2급
- 6~7학점 이수 : 3급
- 5학점 이하 : 불합격

나. 학위과정 관련 기준

■ 교육과정

- 해당 대학(원)의 한국어교육전공(학과)은 완전히 분리된 하나의 전공 혹은 학과로 개설되어야 한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학과)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주 의】 학위기에 한국어교육전공/복수전공 또는 한국어교육 부전공이 명기되어야 함.

※ 외국 대학(원)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동일한 학위과정 내에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한다.

【주 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합산되지 않음.
선수 과목은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

- 학점 인정 여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 개별 과목별로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외국 국적자

- 외국 국적자가 학위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한다.

다. 양성과정 관련 기준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의 인정 범위
 - 국내 양성과정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 포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국외 양성과정
 -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현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양성과정
 -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양성과정
- 수업 시간 인정
 - 주간 수업 : 50분을 1시간으로 인정
 - 야간 수업 : 45분을 1시간으로 인정
 - 온라인 원격 수업 :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
- 과정 수료 기간
 -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 수료
- 이수증명서 양식
 - 이수증명서는 소정의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 받아야 한다.

라. 승급 심사 관련 기준

■ 승급 대상

- 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한 후, 소정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또는 2급으로 승급이 가능함.

■ 승급 요건

- 다음의 ①과 ②를 충족할 때 승급될 수 있다.

① 법정 최저 소요 연수 충족 (3년 또는 5년)	+	②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의한 시간이 법정 시수 충족
-----------------------------------	---	---

구 분	대 상	기 준	
		자격 취득 후 최저 소요 기간	총 합산 강의 시간
1급 승급	2급 취득자	만 5년	2,000시간 이상
2급 승급	부전공(학위과정) 3급 취득자	만 3년	1,200시간 이상
	양성과정 3급 취득자	만 5년	2,000시간 이상
2급 승급 ※ 경과조치 (현행 규정으로는 승급 불가능. 승급이 가능하도록 '10년 내 법 개정 완료 예정)	학위과정 3급 취득자	만 3년	1,200시간 이상
	양성과정 3급 취득자	만 5년	2,0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 취득자		
	8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 3급 취득자		

【참 고】

- ① 최저 소요 기간과 총 합산 강의 시간을 충족할 경우 승급 심사 신청 가능
- ② 심사 시 연 평균 강의 시간은 관계하지 않음.
- ③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 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함.
- ④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함.
※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관계 법규에 따라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국내의 아래의 기관
 -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

-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한다.

■ 경력증명서 양식

- 경력증명서는 소정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 여러 기관에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기관별로 소정의 양식에 맞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 해외 경력은 소정의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 맞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 받아야 한다.

【승급 합격의 예】

- ▶ 1급 승급 합격
 -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5년 경과 + 강의 시수 2,000시간
 -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6년 경과 + 강의 시수 2,200시간
- ▶ 2급 승급 합격(양성과정)
 -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7년 경과 + 강의 시수 2,500시간

【승급 불합격의 예】

- ▶ 1급 승급 불합격
 -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4년 경과 + 2,800시간
→ 자격 취득 후 법정 소요 연수 1년 부족으로 불합격
- ▶ 2급 승급 불합격
 - 부전공으로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5년 경과 + 1,000시간
→ 강의 시간 200시간 부족으로 불합격
 -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3년 경과 + 2,500시간
→ 자격 취득 후 법정 소요 연수 2년 부족으로 불합격

II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운영 지침¹⁾

1. 대학(원)의 한국어교육전공

가. 교육과정

■ 교육과정

- 한국어교육전공(학과) 운영 시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의 전 교과목에는 [별표 1]의 해당 영역을 표시한다.
- 한국어교육 전공자에게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안내하여 전공자가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은 1영역, 3영역, 5영역순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2, 4영역은 과목 개설 담당자가 교육과정, 전공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201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 심사” 결과, 대학기관의 30% 이상이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의 법정 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한국어교원 자격과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5년 7월 자격제도 시행 직후인 '06년에 학위과정 및 단기양성기관은 74개소였으나 '10년 5월 현재 177개소(약 2.5배)가 넘는다. 교육과정 미비, 전문교원 미확보 등의 상태로 학과(전공)를 개설한 곳이 많다. 특히 이들 기관 중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내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아 양성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양질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편, 단기양성기관의 운영 지침은 2009년에 실시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어교육전공 교육과정표 및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안내의 예시(학부)>

학 년	1학기(학점/영역)	2학기(학점/영역)
1학년	(한)국어학개론(3학점/1영역) 한국어교육개론(3학점/3영역)	(한)국어어문규범(3학점/1영역) 언어학개론(3학점/2영역) 한국어교수법(3학점/3영역)
2학년	(한)국어문법론(3학점/1영역) (한)국어의미론(3학점/1영역) 한국어이해 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어문법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어어휘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문화론(3학점/4영역)
3학년	(한)국어음운론(3학점/1영역) 한국어평가론(3학점/3영역) 한국어표현 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어발음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어교재론(3학점/3영역) 한국문학개론(3학점/4영역)
4학년	한국문화교육론(3학점/3영역) 한국어교육실습(3학점/5영역)	응용언어학(3학점/2영역) 한국어교육과정론(3학점/3영역)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영역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1영역	6학점	3학점
2영역	6학점	3학점
3영역	24학점	9학점
4영역	6학점	3학점
5영역	3학점	3학점
합 계	45학점	21학점

※ 위 표는 예시이므로 학과(전공)의 사정이나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사정표

4학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공 학생에게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사정표를 배부하고 학과 조교나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게 하여 부족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사정표 예시>

영역	필수이수학점	이수한 교과목	부족한 학점	담당 확인
1영역	6학점			
2영역	6학점			
3영역	24학점			
4영역	6학점			
5영역	3학점			

■ 한국어교육전공(학과) 개설 시 교육과정 설계

- 한국어교육전공은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운영한다.
- 특히 3, 5영역은 타 전공 교과목을 통해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이수하지 않도록 한다.

【부적합 사례】 한국어교육전공 학생이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수업을 한국어교육 전공과목으로 수강한 경우

【참 고】 1영역(한국어학),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영역(한국문화)은 해당 교과목을 전공 내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타 전공의 교과목이나 교양 과목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때에는 한국어교육전공 교수의 논의하에 한국어교육전공으로서 1, 2, 4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지정 혹은 추천한다.

나. 교과목

■ 교과목 개설

- 한국어교육전공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설한다.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불인정 교과목의 예

- ❖ 논문작성 및 연구방법지도(논문지도, 연구방법론)
- ❖ 한국어교원 자격과 무관한 과목(문예창작 등)

【참 고】 교육과정상 위 교과목이 필요할 경우 전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교원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도록 한다.

■ 교과목의 내용 및 영역을 담당 교수(강사)에게 고지

- 전공(학과) 책임자는 교과목의 목적, 내용, 영역 등을 담당 교수(강사)에게 분명히 알리고, 교과목 담당 교수(강사)가 교과목명과 내용, 영역을 일치시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 교과목 영역 설정

- 전공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영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 교과목명은 설정된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이어야 한다.

【부적합 사례】 2영역인 '외국어습득론'을 3영역으로 설정한 경우

- 교과목의 교육 내용은 타 영역과 정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부적합 사례】

- 교과목은 한국어학(1영역)이지만 교육론(3영역) 내용으로 구성하는 경우
- 교과목은 한국어문법교육론(3영역)이지만 한국어 문법론(1영역) 내용으로 구성하여 국어학 이론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과목명은 ‘한국어문화교육론’이나 한국의 문화적 특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각 영역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

영역	주 교육 내용	유의 사항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에 대한 일반 내용(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론(3영역)과 관계없이 한국어학의 지식 습득을 위한 영역임.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의 세부(하위) 내용은 2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 ‘외국어습득론’은 2영역에 해당되나 교수법은 3영역이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명은 3영역이나 실제 수업 내용이 1영역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4영역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를 학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특성 때문에 교과목이 다양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소양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문학개론, 시론, 문화비평, 세계문화론 등)은 4영역에 해당되지 않음.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전공 학생이 실제 한국어 교육을 실시	세부 지침 참조(21쪽)

세부 교과목 지침

☞ 교과목 심사 결과, 영역 혼동을 주는 교과목을 정리한 것임.

(1) 외국어습득론, 제2언어습득론: 2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외국어 습득 원리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다. 모어의 역할, 중간언어와 중간언어의 변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학습자의 개인차,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외국어 습득 전략 등을 살펴본다.

(2) 오류분석론: 2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양상과 유형, 오류 분석 방법, 오류 발생 원인을 모색한다.

(3) 외국어교수법, 언어교수이론: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외국어 교수·학습 이론에 따른 외국어 교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외국어 교수법과 언어 기능별로 효율적인 교수법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4) 한국문화교육론: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문화 교육의 내용을 선정하고 효율적인 문화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주 의】 단,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전제로 한국문화에 대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의 문화 탐구가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4영역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한국어한자(어)교육론: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일환으로 한지어 교수법의 필요성을 살피고, 한지어 교육의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주 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자어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론 과목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자 교육(부수, 획수, 육서, 한자 형성 원리, 한문 강독 등)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6) 한국어교육특강, 한국어교육세미나: 3영역

- 주요 과목 개요: 한국어교육론으로 개설된 교과목 이외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해 탐구한다.

(7) 영역 설정이 모호한 교과목

- 1, 2영역 과목: 한국어정보학, 한국어정보처리론, 한국어말뭉치
- 1, 2, 3영역 과목: 한국어학습사론

【주 의】 단, (일반)언어정보학(2영역) 등과 같이 영역이 명확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개설해야 함.

위와 같이 교과목 내용상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 **교육 내용의 비중을 기준으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영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단, **한번 영역을 지정하면 영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설정된 교과목의 영역을 전공 학생에게 공지한다.

■ 한국어교육전공 교과목 명칭

- 한국어교육전공 교과목은 과목명에서 교육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 특히 3, 5영역의 교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임이 명시적으로 보이도록 한다.

【부적합 과목명 예시】

영역	부적합 과목명	사 유	적합한 과목명
3영역	국어문법교육론	예시의 부적합 과목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 해당하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목명으로 적합하지 않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국어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영역	부적합 과목명	사유	적합한 과목명
4영역	현대문화비평론	과목명에 '한국'을 명시함. ※ 한국의 것을 다루지 않는 교과목(4영역 불인정)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됨.	한국현대문화비평론
	전통문화론		한국전통문화론
	문학개론		한국문학개론
	현대시론		한국현대시론
5영역	교육실습/ 현장연구/현장지도/ 한국어지도론	한국어교육실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과목명임.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 한국어교육실습에는 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주 의】 담당 교수의 지도 및 평가가 없는 자원봉사, 인턴제는 실습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실습, 해외 인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담당 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한다.

* 실습 과목은 다음의 모형 중 하나가 된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강의 참관	강의 참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모의 수업	강의 실습
강의 실습		

- 한국어교육실습 과목은 학년 또는 학기 등으로 수강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학 부 : 1, 3영역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대학원 : 3학기 이상 등

강의 참관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한다.
 - 가급적 초·중·고급의 수업을 고루 참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강의 참관자가 반드시 참관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 참관 지침을 안내하고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모의 수업

-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의 실습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한다.
- 강의 실습 전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습한 기관에서 반드시 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다. 전임교원 배치 및 교수진 구성

■ 한국어교육전공(학과)에 전임교원 배치

- 한국어교육전공(학과)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전임 교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3영역 및 5영역 교과목의 교수진 구성

- 3영역 및 5영역 교과목의 교수(강사) 자격은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단기양성기관) 운영 지침²⁾

가. 교육과정

■ 교육 기간 및 교육 시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총 교육 기간은 15주 이상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4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2) 이 운영 지침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실태조사」(2009년, 국립국어원)와 201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등 심사”에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고 한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실태조사 결과 양성과정 이수자들의 교육 만족도가 21개의 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 환산 시에 50~60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동안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운영 기준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단기양성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교육과정 심사 시에도 적용됨.)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1일 총 교육 시간은 4시간 이하가 적합하며 최대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실제 교육 시간만이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된다.
 - ※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시험이나 수료식 등은 필수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 교과목 편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별표 1에서 정한 바대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 【주 의】 각 영역 교과목의 총 합산 시간이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불인정 교과목의 예

- 주제 발표와 관련된 과목(연구발표회, 연구수업, 세미나, 워크숍 등)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는 과목(한국어교육 자격 대비 등)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과 무관한 과목(레크레이션 등)
- 오리엔테이션, 종합시험, 수료식 등

- 각 영역의 교과목의 내용은 타 영역과 정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부적합 사례】
 - 언어유형론(2영역)에서 한국어학 내용(1영역)이 주를 이루는 경우
 - 한국문화론(4영역)에서 한국어교육론 내용(3영역)이 주를 이루는 경우
- 과목명에 ‘한국어’(1, 3영역) 또는 ‘한국’(4영역)을 명시하도록 한다.
 - 【예 시】
 - 맞춤법(1영역) → 한국어맞춤법
 - 표준어발음법(1영역) → 한국어표준어발음법
 - 어휘교육론(3영역) → 한국어어휘교육론
 - 교재분석(3영역) → 한국어교재분석
 - 문화체험(4영역) → 한국문화체험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

- ‘강의 참관’은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교 재

- 양성과정의 교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출판 교재를 사용하거나, 기관 자체의 교재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교재 제작에 참여했거나 감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수 업

■ 교과목의 내용

- 각 영역별 교과목명과 실제 수업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 모든 강사에게 이를 분명하게 고지하고 강의안을 제출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육실습

- 강의 참관은 필수로,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 중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 실습 과목은 다음의 모형 중 하나가 된다.

모형 1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모형 2
강의 참관
모의 수업

모형 3
강의 참관
강의 실습

강의 참관

-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도록 한다.
- 강의 참관의 횟수는 초, 중, 고급별 각 1회 이상이 바람직하다. 수준별 참관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 강의 참관 전후에 참관 일지 작성, 참관 평가 등 참관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의 수업

- 모의 수업은 외국인 학습자, 양성과정 동료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모의 수업은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모의 수업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강의 실습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한다.
- 강의 실습은 양성과정 전체 수강생들에게 1회 이상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 강의 실습 전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모의 수업이나 강의 실습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교과목명을 '강의 실습평가'나 '모의수업평가' 등으로 한다. 5영역의 교과목명이 '평가'가 될 경우 과정 내의 종합시험과 혼동을 줄 수 있다.

다. 평가 및 학사 관리

■ 출석 관리

- 원칙적으로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 출석률을 수료 조건으로 한다.

【주 의】 단,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반드시 20시간 이상은 출석해야 한다.

- 수강생의 출결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 평 가

-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의 영역은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 한국어교육실습(5영역)은 수강생이 실습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수료 기준

- 수료 기준은 출석 기준에 부합하고 필기시험 및 실습 영역 평가에서 각각 60%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다.

온라인, 온·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의 양성과정 개설 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학사 및 출결이 관리되어야 한다.

라. 교과목 강사

■ 강사의 자격

- 1, 2, 4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해당 분야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3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대학(원)의 해당 분야 전공학과 전임강사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5영역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강사진의 구성

- 강사진은 영역별로 최소 2인 이상(3영역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 10명 이상의 강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마. 일반 사항

■ 교육 기본 시설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업을 위한 전용 강의실을 하나 이상 갖추어야 하며, 수강 인원에 적절한 강의실이어야 한다.
- 전용 강의실은 칠판, 마이크,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의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 행정 직원

- 양성과정 운영 기간 동안 수강생들을 지원할 행정 직원 또는 교육 조교가 상주하거나 지원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 프로그램 평가

- 매 학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차후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지원 자격 및 학력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양성과정의 개설 목적과 성격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이수증명서 발급

-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발급해야 해야 한다.
- 이수자의 교육 기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주 의】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전 과정 수료’, ‘교육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등의 규정이 있는바, 이수증명서에 교육 기간이 잘못 기재된 경우, 이수자가 억울하게 불합격될 수 있음에 유의

Ⅲ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 심사

1. 심사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 '09년까지 자격 심사 체계는 자격 취득 희망자가 졸업 후에 자격 심사 신청을 하면 성적(이수)증명서상의 이수학점(시간)이 법정 필수이수학점(시간)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후 심사 방식임.
- 이에 따라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착오로 영역별 필수이수과목(시간) 개설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동일 과정의 이수자 전원이 불합격되고 있으며, 학위과정의 경우 전공자 개인의 실수 또는 미인지로 인해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심사 목적

- 한국어교원이 되려는 자가 억울하게 불합격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한국어교원 양성 및 한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전에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교과목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교육과정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심사 근거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심사 결과의 활용

- 개인별 자격 심사 시에 심사기준으로 활용
 - 해당 대학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적합 여부
 - 이수 교과목의 영역 구분 및 필수이수학점 적합 여부
- ‘누리-세종학당’에 DB를 구축하여 교육기관 및 일반인에게 공개
 - 대학 등 교육기관에게는 교육과정, 교과목 등 개설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 희망자에게는 교육기관을 선택하거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 (2010년 7월부터 ‘누리-세종학당’에서 서비스)

2. 심사 시기 및 절차

■ 심사의 대상 및 심사 시기

- 심사 대상
 - 한국어교육 전공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즉, 단기양성기관)
 -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 심사 시기 : 연 2회 정기 심사(12~2월, 6~8월)
 - ※ 단, 개인 자격 심사(연 3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심사 받지 않은 교과목 또는 교육과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심사 대상 및 제출 자료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자료* (누리-세종학당 입력)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심사 신청서 (과목 개설 현황, 교수요목 첨부) 교과목 심사 신청서 (강의계획서 첨부) 	이미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교과목 심사 신청서 (강의계획서 첨부)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또는 개편 시(수업시수, 교과목 등 변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과정 심사 신청서 (양성과정 개요, 과목 개설 현황, 교수요목 첨부) 	

* 제출 자료 중에 심사 신청서(교육과정/교과목/양성과정)는 '누리-세종학당' 시스템 입력으로 같음. 단, 위의 제출 자료는 시스템 입력 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심사 절차 및 방법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을 통한 온라인 심사



<기관에서 최초로 심사 신청을 하거나 담당자를 변경할 경우>

① 기관의 ‘담당자 지정(변경) 명단’을 국립국어원에 송부

- 담당자 : 대학 및 대학원은 각 전공과정의 학과장(또는 주임교수)이 지정한 자, 단기양성기관은 운영 책임자가 지정한 자.

* 담당자 지정(변경) 서식 : ‘누리-세종학당’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 보내는 곳 : kteacher@korea.kr(전화 02-2669-9672, 9671/

전송 02-2669-9747),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② ‘누리-세종학당’ 접속 인증 번호를 받음.

- 심사 신청은 접속 인증번호가 부여된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 2011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구축할 예정임.(즉, 각 기관의 담당자 접속인증번호 부여 방식 폐지)

● 재심사(이의신청) 대상

최초 심사 결과	판정 사유	재심사 신청 대상
부적합	심사기준에 부적합 등	신청기간에 재심사 신청
보류	자료 미비 등	신청기간에 재심사 신청
조건부 적합	일부 부적합(미비)	불필요(자율적으로 보완)
적합	심사기준에 적합	불필요

3. 심사 내용 및 심사기준

가. 교육과정

■ 학위과정

- 한국어교육전공(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개설 운영되는지 여부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

■ 양성과정

-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충족 여부
-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양성과정의 경우,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의한 학사 및 출결 관리 여부

나. 교과목(영역 판정 및 필수이수학점 적합 여부)

■ 1영역: 한국어학

-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내용
 - 국어학 일반에 관한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 한국어학 하위 분야의 내용

【예시 과목】

-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일반언어학의 개념과 특징 및 하위 분야
 - 언어학과 관련된 이론과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보편 언어의 구조와 특징
 - 일반언어학 관련 과목들과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관련 과목
 - 응용언어 · 언어학개론 · 대조언어 · 사회언어 · 심리언어 또는 외국어 습득과 관계된 내용 위주의 과목

【예시 과목】

-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 습득론 등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

【예시 과목】

-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수이론(언어교수이론)
-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한국어교재론, 교안작성법 등
-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한자어교육론
-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 4영역: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문화 전반, 즉 한국의 역사 · 민속 · 철학 · 정치 · 경제 · 사회 · 지리 · 예술(문학 · 음악 · 미술 · 연극 · 건축 · 공예 등) 등 한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

※ 과목명에 ‘한국’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과목】

- 한국의현대문화, 한국의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개론, 한국문학의이해, 한국민속학 등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며, ‘모의 수업’이나 ‘강의 실습’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실시한다.
- 담당 교수의 지도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의 유의 사항

■ 교육과정 부적합 판정(학위과정, 양성과정)

- 부적합 판정된 교육과정을 졸업(이수)한 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 교과목 부적합 판정(학위과정)

- 심사 결과 판정 영역이 기관의 신청 영역과 다른 경우
 - 【예 시】 3영역 신청 → 1영역 판정 : 개인별 자격 심사에서 1영역 교과목으로 적용함
- 심사 결과 한국어교원 자격과 무관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음.(개인별 자격 심사에서 필수이수학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해당 기관은 부적합 판정 교과목에 대해 학생들에게 공지 및 보완 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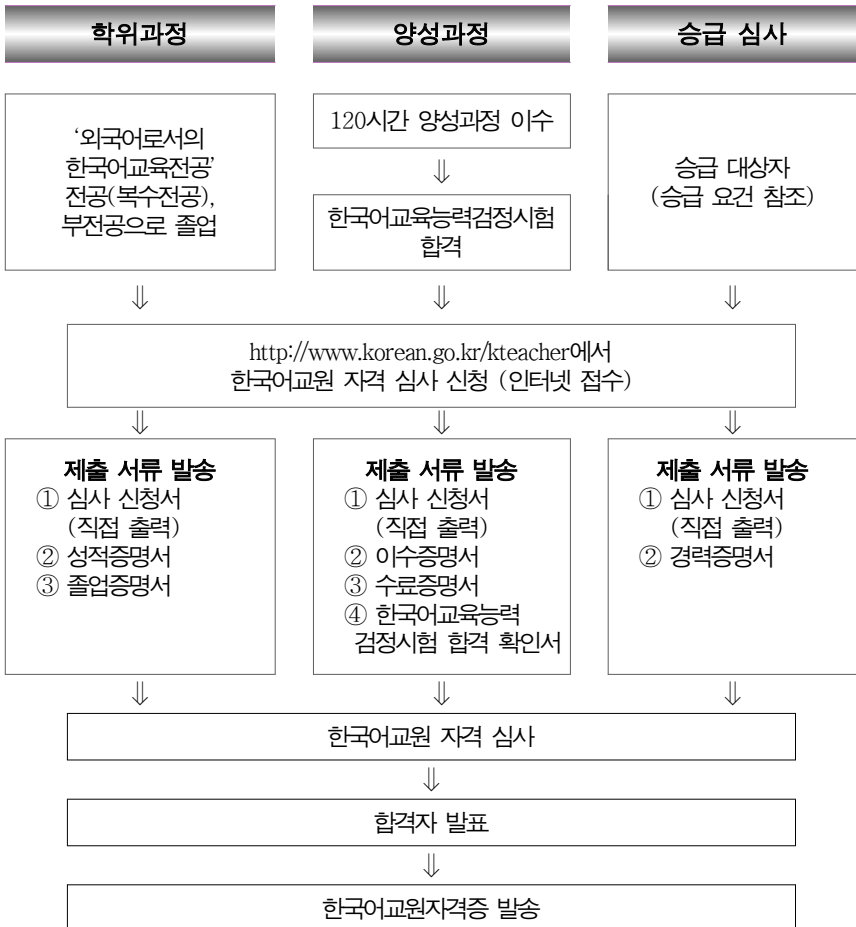
IV



개인 자격 심사

1. 자격 심사 신청 절차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절차 흐름도



2. 등급 및 유형별 세부 심사기준

가. 학위과정

■ 제도 시행('05.7.28.) 이후 대학(원) 입학자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2급-9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자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 (※ 외국 국적자에 한함.)

【심사기준】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충족

영역		학부	대학원
1영역	한국어학	6학점	3~4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9~10학점
4영역	한국문화	6학점	2~3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2~3학점
합 계		45학점	18학점

※ 대학(원)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10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부전공자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증(※외국 국적자에 한함.)

【심사기준】

-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충족

1영역	한국어학	3학점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3학점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9학점
4영역	한국문화	3학점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합 계		21학점

※ 대학(원)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 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시행령 이전 입학자라 하더라도 심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학과)’의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 】 한국어교육전공 개설 시점이 2006년일 경우, 2003년도 입학자(시행령 이전 입학)이라 하더라도 시행령 이후 기준으로 심사함.(경과조치 대상자 아님.)

■ 제도 시행('05.7.28.) 이전 대학(원) 입학·졸업자(경과조치 대상자)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2급-1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자 (※ 경과조치 대상자)	① 졸업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심사기준】

<대학 졸업자>

- 3·5영역 합산 18학점 이상이면 2급 취득
- 3영역은 필수학점임.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8학점 이상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3·5영역 합산한 이수학점이 10~17학점이면 3급을 부여함.

<대학원 졸업자>

- 3·5영역 합산 8학점 이상이면 2급 취득
- 3영역은 필수학점임.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8학점 이상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3·5영역의 합산한 이수학점이 6~7학점이면 3급을 부여함.

※ 대학(원)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 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2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부전공자 (※ 경과조치 대상자)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심사기준】

- 3·5영역의 합산하여 10학점 이상 3급 취득
- 3영역은 필수 학점임.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10학점 이상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 대학(원)의 교과목 심사에서 일부 교과목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 필수이수 학점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학과)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나. 비학위과정(양성과정, 경력 등)

■ 제도 시행('05.7.28.) 이후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11번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①이수증명서 원본 (별지 제2호 서식)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120시간)을 모두 충족

1. 한국어학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46시간
4. 한국문화	12시간
5. 한국어교육실습	20시간
합 계	120시간

- 양성과정 이수 후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2009년 이후) 및 한국어세계화재단(2006~2008년)이 주관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만 인정됨.

- ※ 이수한 양성과정이 기관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불합격될 수도 있음.

【불합격의 예】 양성기관이 3영역을 46시간으로 개설하였더라도 3영역 과목인 '중국어권 학습자 문화 이해'가 3영역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 과목의 이수시간은 제외되어 3영역 필수이수시간(46시간) 부족으로 불합격될 수 있음.

■ 제도 시행('05.7.28.) 이전 관련자(경과조치 대상자)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5번	시행령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인 자 (※ 경과조치 대상자)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심사기준】

- 시행령('05.7.28.) 이전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만 인정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국내외 정부기관

- '한국어교육 경력 800시간'은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교육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한정함.
- 경력증명서는 소정의 양식에 맞춰 발급 받아야 함.
- 외국에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반드시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야 함.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6번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년)'에 합격한 자 (※ 경과조치 대상자)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 시행령 시행('05.7.28.) 전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년)' 합격만 해당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3급-7번	시행 이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록 또는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 경과조치 대상자)	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확인서(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인 120시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취득할 수 있음.
- 양성과정 이수 후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09년 이후) 및 한국어세계화재단('06~'08년)이 주관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만 인정됨.

다. 승급 대상자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1급-12번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급 → 1급 승급)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심사기준】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
-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5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2,000시간
- ※ 자세한 사항은 11쪽의 승급 심사기준 참조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2급-13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부전공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3급 → 2급 승급) ◦ 시행 이전 학위과정 입학 및 졸업으로 3급을 취득한 자 (※ 현행 규정으로는 승급 불가능. '10년 내 승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완료 예정)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심사기준】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
-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3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1,200시간
- ※ 자세한 사항은 11쪽의 승급 기준 참조

등급 및 유형	대 상	제출 서류
2급-14번	양성과정으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 (3급 → 2급 승급)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 이전 8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3급을 취득한 자 ◦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으로 3급을 취득한 자 ◦ 시행 이전 양성과정 등록 및 이수로 3급을 취득한 자 <p>(※ 현행 규정으로는 승급 불가능. '10년 내 승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완료 예정)</p>	

【심사기준】

-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및 경력 인정 범위
- 자격 취득일로부터 최소 5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2,000시간
- ※ 자세한 사항은 11쪽의 승급 기준 참조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부 록]

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부록 1] 한국어교원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학위 과정

? 이수한 과목명이 예시 과목명과 다를 경우에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목의 영역 판정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1~5영역 중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이라고 판단하여 개설하였더라도 강의계획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영역별 교과목 개설 기준과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교수, 한국어교육전공 교수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수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부터는 대학(원)의 교과목 영역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cdang.org>)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2010년 7월부터 공개)

? 교양 과목(혹은 타 전공과목)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과목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 과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영역(한국어학), 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4영역(한국문화)의 과목들은 교양 과목(혹은 타 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과 5영역(한국어교육 실습)의 과목을 교양 과목(혹은 타 학과 전공과목)으로 수강할 경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저는 대학원생인데, 학부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을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정 내에서 이수한 과목만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 대학원 과정의 선수 과목도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나요?
- ✔️ 선수과목은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으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이 표준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기 등의 공적인 문서에 전공 표시가 되어야 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부전공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나요?
- ✔️ 네.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부전공하여 졸업하였더라도 전공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복수전공)하였는데 필수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은 충족하는데 이때 3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 전공(복수전공)자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2급 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전공(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더라도 2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편입학한 경우, 심사 시에 입학 시점의 적용 기준이 달라지나요?
- ✔️ 네. 한국어교육전공(학과)에 편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조치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에 한국어교육전공(학과)으로 편입학했다면 입학년도가 2006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경과조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저는 2004년에 입학하여 2006년에 개설된 한국어교육을 복수전공 하였습니까. 이럴 경우 경과조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 ✔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05.7.28.) 입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교육전공(학과) 개설일이 시행령 개정 이후라면 경과조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45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대학원 수료한 경우에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 ✔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사 신청 시 졸업증명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 ❓ 외국 국적자의 경우도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2차(9월) 심사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드시 TOPIK 6급 합격증을 제출해야 함).

비학위과정(양성과정)

- ❓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데 학력 조건은 없나요?
-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학력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시,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 ❓ 양성과정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 등록해야 하나요?

-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대학(원)과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사전에 심사(기관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신청자는 잘못 설계된 과정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양성과정을 선택할 때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심사 결과는 2010년 7월부터 누리-세종학당 (<http://www.sejonghakda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8년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꼭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봐야만 3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1항 3호 나목’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신 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나요?
- 아닙니다.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후 국립국어원에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서는 신청자들이 양성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심사에 합격한 분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 기준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필기시험의 4가지 영역(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문화)에서 각각 40퍼센트 이상(즉, 1영역에서

36점 이상, 2영역에서 12점 이상, 3영역에서 60점 이상, 4영역에서 12점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 300점의 60퍼센트인 1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함을 의미합니다.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양성과정을 이수해도 되나요?
- 👉 안 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1차 시험일(필기)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이후에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시엔 불합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09년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응시자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09. 12. 16.) 이전에 양성과정 수료 시 인정('09. 8. 24. 본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후 국공립대학교 평생교육원협의회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을 대신해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안 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 1항 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증만 인정됩니다.
- ❓ 저는 2004년에 양성과정을 이수했는데 120시간의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양성과정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 시행령 이전(05.07.28.) 양성과정에 등록 또는 수료한 경과조치 대상자의 경우, 12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및 승급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급으로 승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3급 자격증 취득 후 2급으로, 2급 자격증 취득 후 1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승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기 준 (경력은 자격증 취득일 이후로 산정함)
1급	2급 취득자	2급 자격 취득일 이후 만 5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2급	부전공(학위과정) 3급 취득자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만 3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1,200시간 이상
	양성과정 3급 취득자	3급 자격 취득일 이후 만 5년 경과 & 취득 이후 총 강의 시수 2,000시간 이상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동안 강의를 하여 한국어교육 경력 2,000시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1급으로 승급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승급 심사 신청을 할 경우 ‘자격증 취득일 이후 경과 기간’과 ‘강의 시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고 총 2,00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불합격됩니다.

❓ 3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급까지 승급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승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 취득일 이후 경과 기간’과 ‘강의 시수’를 충족한다면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승급 심사 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4.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국외 세종학당(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 한국교육원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
- ❓ 국어기본법 시행 전, 800시간 이상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자격 심사 신청을 할 때, 경력 인정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 👉 국어기본법 시행 전, 800시간 이상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한국어교육 경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 ❓ 저는 외국인 초등학교에서 한국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한국어교육 경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 👉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 등이 해당됩니다.
- ❓ 강의 경력을 증명할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 👉 소정의 양식(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기관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언어로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 저는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강의 경력을 합산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강의한 기관과 강의 내용이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면,

한국어교육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신청 및 기타

- ❓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별도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도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는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심사 단계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무시험 검정'이라고 기재됩니다.
- ❓ 심사 신청 후 합격자 발표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 심사 접수 기간은 보통 한 달이며, 접수 후 약 3주 정도 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열린 후 약 1-2주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심사 신청 마감일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이 밖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http://www.korean.go.kr/kteacher>)을 참고해 주십시오.

[부록 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법규

가. 현행('10년 5월 현재)

●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부칙 제1조

(제정 2005. 1. 27. 법률 제7368호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3호)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①국가는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7367호, 2005.1.2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부칙 제2조

(제정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 / 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제13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이하 “한국어교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4조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부 칙 <제18973호, 2005.7.27.>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 이 있거나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별표 2]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종(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1)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 2항에 따라 한국어교원자격 부여를 위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 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교육과정(또는 교과목)이 영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또는 교과목)이 영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영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영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한국어교육, 국가자격제도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장,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④위원회에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립국어원 공무원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의 임기) ①제3조 제3항 제1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하기 위해 대학(원)과 한국어교원양성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 별지서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대학 등에서 제2항의 별지서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학 등의 교과목 등을 조사하여 제1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 8 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2009. 10. >

- ①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이 규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 서식 생략

2)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및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규정

제 1 조(자격 심사 횟수 및 일정 공고) ①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기간을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45일 전에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조(자격 심사 신청 및 자격증 교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제19조제2항, 영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한다.

②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제 3 조(자격 심사 시 제출 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별표 1로 하고 각 서류는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자격증 재교부) 제2조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문화관광부장관은 자격증 교부, 재교부에 드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고, 그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부 칙 < 2005. 11. >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 생략

- 나. 2010년 내 시행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인 제 · 개정안
- 국어기본법 시행령 및 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3단 비교표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p> <p>① (생략)</p> <p>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 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p>	<p>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한국어교원 1급 <u>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u></p>	<p>제1 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 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 행	개정안	
<p>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u>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자</u></p>	<p>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u>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u></p>	
<p>나. <u>제3호 기문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u></p> <p>다. <u>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u></p> <p><신 설></p>	<p>나. <u>제3호 기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u></p> <p>다. <u>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u></p> <p>라. <u>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2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자</u></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 행	개정안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친 공으로 하여 <u>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u></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에 <u>합격한다</u></p> <p><신 설></p>	<p>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친 공으로 하여 <u>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u></p> <p>나.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u>응시하여 합격한다</u>.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부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p> <p>라.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교부한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또는 필수이수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국어교육 경력의 인정 기준,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의2(대학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의 영 제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p>	<p>시행규칙 제정안</p> <p>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 및 경력 심사기준 등) ①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영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신 설></p>	<p><신 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p>②문화체육관광부는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제 3 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 ①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연 2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한국어교원 자격심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심사 실시 30일 전에 자격심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신설>		<p>제 4 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한국어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p>③제2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을 임명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이 영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지에 관한 사항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이 영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해당하지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별표 2의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p>제 5 조(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 6 조(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 ①영 제13조에 따라 한국어교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3의 신청 등급·유형별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p>제 7 조(대학 등의 교과목 등 심사 절차) ①영 제13조의2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원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과정 심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교과목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양성과정 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등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14조(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 ② (생략)</p> <p>③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 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시 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p> <p>④ (생략)</p> <p><신 설></p>	<p>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합격자는 필 기시험에서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면접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p> <p>⑥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p> <p>⑦응시 수수료, 환불 및 기타 한국어교육능 력검정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 행	개정안	
<p>부 칙<제18973호, 2005.7.27.></p> <p>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기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 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2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부 칙<제18973호, 2005.7.27.></p> <p>제 2 조(한국어교원 자격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2호기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중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u></p>	<p>1. 한국어교원 2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p>
<p><신 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
<p><신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이수하였거나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이 영 시행 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이수하는 자로서 이 영 시행 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p>	<p>2. 한국어교원 3급 : 별표 1의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속한 과목과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한점을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경력이 있거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05년 7월 28일 이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원 3급을 부여할 수 있다.</p>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시행규칙 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친공으로 한 자가 별표 1에 따른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과목 중 한 개 이상을 이수하고,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에 속한 과목의 이수 학점과 합산하여 대학에서 1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한국어교원 3급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부 칙<제00000호, 2010. 0.00></p> <p>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필수이수학점 취득과 관련 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2월 28일 전에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졸업 이후에 별표 1에 따라 부족한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기목 및 제3호기목의 규정에 따른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한국어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시행규칙 제정안</p> <p>제 1 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p> <p>부 칙</p>

● 시행령 개정안 별표 및 별지 서식

[시행령 별표 1](현행과 동일)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 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 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시행령 별표 2](현행과 동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방법(제14조제2항 관련)

영역	배점		시간	방법
별표 1의 제1호	90	120	100분	필기
별표 1의 제2호	30			
별표 1의 제3호	150	180	150분	
별표 1의 제4호	30			
	300점		250분	
구술시험	합격/불합격			면접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한 국 어 교 원 자 격 증	
KOREAN LANGUAGE TEACHER'S CERTIFICATE	
번	호
Certificate No.	
이	름
Full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자	격
Certificate	
<p>「국어기본법」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having satisfied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has this day been awarded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CERTIFICATE.</p>	
<p>년 월 일</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Minister o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8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직인</p> </div>	
<p>1. 검정 종별</p> <p>2. 법정 해당 자격기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격기준 제00호00목</p> <p>3. 수여 조건</p>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국어문화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단체명·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 요망 사항 :				
「국어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국어문화원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서식

[시행규칙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관련 세부 심사기준

1. 영 제13조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 시간

가. 영역별 과목 심사기준

영역	세부 심사기준
한국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내용과 국어학일반에 관한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 한국어학 하위 분야의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학의 세부분야가 아닌, 일반언어학 또는 응용언어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언어학의 개념과 특징 및 하위 분야, 언어학과 관련된 이론과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보편 언어의 구조와 특질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일반언어학 관련 과목들과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관련 과목들을 대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응용언어언어학개론·대조언어·사회언어·심리언어 또는 외국어습득과 관계된 내용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어교육개론·교육과정·평가·교수이론·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이해교육법(듣기, 읽기)·발음교육·문법교육·어휘교육·교재론·문화교육·한자교육·교육정책·번역·교안작성법 등 그 내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문화 전반, 즉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문학·음악·미술·연극·건축·공예 등) 등 한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화이해 등처럼 일반문화론 과목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목명에 '한국'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함
한국어교육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자가 실제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강의 참관·모의 수업·강의 실습' 등을 실시하는 것

※ 과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해당 과목 명칭이 포함되는 영역별 세부 심사기준과 명확히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 1) 동일 학위과정 내에서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므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은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 2) 학점 인정 여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 3) 개별 과목별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거나,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학위과정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5)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 1)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현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 2) 주간 수업일 경우 50분을 1시간으로, 야간 수업일 경우 45분을 1시간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일 경우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 3)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한국어 교육 경력의 범위

-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 국내외 정부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3.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년 실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

영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자격 승급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라. 관계 법규에 따라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국내의 아래의 기관
 -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 ‘한국어교육 경력’은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교육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3]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급·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조 건	신청 등급	유형 번호	제출 서류
학위과정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취득한 자	2급	9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 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한국어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	10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합격 증명서 (※외국 국적자에 한함)
양성과정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급	11	①이수증명서 원본 (별지 제2호 서식) ②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급	12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부전공, 학위과정)	2급	13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3급인 자(비학위과정)로서, 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영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및 라목(양성과정, 경력 등)	2급	14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법 시행 (‘05.7.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자	영 별표1의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8학점 이상 취득한 자	2급	1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한국어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	2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영 별표1의 3영역과 5영역 과목을 대학에서 10학점 이상 1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에서 6학점 이상 7학점 이하를 취득한 자	3급	3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법 시행 (‘05.7.28.) 이전에 교육 경력자 또는 양성과정 등	800 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3급	5	경력증명서 원본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02~‘04,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	3급	6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영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급	7	①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②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반명합판, 3×4cm)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①성 명	(한글) (영문) ※여권에 기재된 이름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국적	
	④주 소	※자격증 발송 주소임		⑤전화(휴대전화)		
				⑥전자 우편		
	⑦신청 등급	()급-()번	⑧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해당자만 기재)	자격증 번호:		
⑨학 력	부터	까지	최 종 학 력 (‘학교명과 학과명’ 또는 ‘학교명과 전공명’ 기재)			
				
⑩양성과정	부터	까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 기관명		이수시간	
				
⑪ 한국어교육 근무경력	부터	까지	근무기관	자격구분(등급)	발령자	
				
				
<p>「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 구비 서류: 뒤쪽 참조 ※ 작성 시 유의 사항: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②번 칸에 생년월일을 기재하십시오. - ④번의 주소로 자격증을 발송하게 되오니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 ⑧번 난부터 ⑪번 난까지는 해당자만 기재하십시오. - ⑪번의 자격구분(등급) 칸에는 ‘수습강사, 시간강사, 전임강사’ 등을 기재하십시오.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수 내용	연도	학기	이수 기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국어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영역 구분	영역별 이수시간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총 이수시간			()시간				
	위 사람은 본 기관에서 위와 같이 소정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또는 기관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직인</div>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 경력 증명서						발행기관 관리문서번호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기관명(부서명)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강의 경력	연도	학기	담당 과목명	강의 시수	강의 기간	비고
강의 시수 합계			()시간			
위 사람은 본 기관에서 위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 또는 기관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자 우 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근 무 기 관			
자 격	등 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교부 신청 사유				
<p>「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수 수 료	없 음
<p>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육과정 심사 신청서			
신 청 과 정	<input type="checkbox"/> 대학(학부과정)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석사·박사과정) <input type="checkbox"/> 양성과정		
신 청 기 관 명		과정(전공) 개설 시기	년 월 일
주 소			
담당자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팩 스	

영역	과 목 명	학점	비고	영역	과 목 명	학점	비고
1. 한국 어학				3.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 언어학				4. 한국 문화			
3.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5. 한국어 교육 실습			
총 과목 수	(개)			총 학점 (이수시간)	(학점, 시간)		

붙임 서류 : 교수요목

년 월 일

○○○학과장 또는 기관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어교육 교과목 인정 신청서				
신청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		
	전자우편	팩스		
① 신청 과목명			② 과목의 해당 영역	() 영역
③ 과목 구분	<input type="checkbox"/> 학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박사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석·박사통합과정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학부 연계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타 전공과목 <input type="checkbox"/> 교양과목 <input type="checkbox"/> 전공교직과목 <input type="checkbox"/>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설 과목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④ 과목 개요	강의 목적			
	강의 방식	<input type="checkbox"/> 강의식 <input type="checkbox"/> 토론식 <input type="checkbox"/> 실습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접 기재:)		
	강의 주요 내용			
	강의 시간	() 학점 / 시간		
	기타			
⑤ 주 교 재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⑥ 부 교 재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⑦ 담당 교수 (최근 3년 이내)	직 위	성 명	학력 및 주요경력	
붙임 서류 : 과목별 강의계획서 1부				
년 월 일 ○○○학과장 또는 기관장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국립국어원 2010-04-03

정부간행물 등록번호 11-1371028-000198-01

기 획 : 김 정 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장)
집 필 : 서 영 희, 정 미 경, 이 유 미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

2010년 6월 인쇄

2010년 6월 발행

발행인 : 국립국어원장 권재일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kteacher>

전 화 : (02) 2669-9742

인 쇄 : (주)계문사(02-725-5216)
